

「통계연구」 발간규정

- 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 1호 2007.11.29.
- 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 2호 2008. 4.25.
- 전부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 3호 2009. 3.17.
- 일괄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 7호 2013.10.21.
-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 9호 2015.11.10.
-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11호 2017. 1.17.
-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13호 2018. 3. 5.
-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16호 2021.11. 8.
-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18호 2023.11.27.
- 일부개정 통계개발원 예규 제19호 2025.01.03.
- 일부개정 국가통계연구원 예규 제 1호 2025. 2.25.
- 일부개정 국가통계연구원 예규 제 3호 2025. 6.30.
- 일부개정 국가통계연구원 예규 제 5호 2025.10. 1.
-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예규 제 1호 2025.12.30.
-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연구원 예규 제 3호 2026. 4.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11.8.>

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논문 공모 후 학술지 배포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투고”라 함은 “통계연구”에 게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게재”라 함은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통계연구”에 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① 「통계연구」의 발간계획과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논문의 편집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며, 3개의 분과위원회(통계·데이터과학, 경제, 인구·사회)를 둔다. <개정 2021.11.8.>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분과위원장

(이하 “분과장”이라 한다) 3명을 포함한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3명 이상과 편집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1명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은 분과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하고, 분과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3., 2025. 6. 30., 2025. 12. 30.>

③ 위원장은 통계·데이터과학, 경제, 인구·사회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이 있는 외부인사 중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④ 분과장은 각 분야(통계·데이터과학, 경제, 인구·사회)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이 있는 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⑤ 위원은 통계학·경제학·인구사회학 등 관련분야의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성, 관련성과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 3., 2025. 2. 25., 2025. 12. 30.>

⑥ 간사는 「통계연구」의 편집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분과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 3.>

②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제5조(역할) ① 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게재, 학술지 편집과 인쇄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통계연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투고된 논문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 3.>

④ 분과장은 위원의 역할을 겸임하며, 각 분과의 회의 주관 등 「통계연구」 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5. 11. 10.>

⑤ 위원은 논문심사 주관 및 회의 참석 등의 「통계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 「통계연구」 발간에 따르는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회의로 구

분한다. <개정 2015. 11. 10.>

② 정기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 「통계연구」 발간 이전에 각 1회 개최한다. <개정 2017. 1. 17.>

③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1/2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④ 분과회의는 필요시 위원장(분과장) 또는 분과위원 1/2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신설 2015. 11. 10.>

⑤ 위원회의 회의 중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개정 2015. 11. 10.>

⑥ 제5항의 규정은 분과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은 “분과위원”, “위원장”은 “분과장”으로 본다. <신설 2015. 11. 10.>

제7조(수당) 외부 위원에게는 정해진 편집위원 활동·심사주관·심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8., 2025. 6. 30.>

제3장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제8조(논문투고) ① 통계 전 분야에 걸쳐 국가통계발전과 학술적·정책적 연구에 기여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

거나 게재를 목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

② 논문은 수시로 위원장에게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11. 8., 2026. 4.13.>

③ 투고된 논문은 「통계연구」 발간규정의 “투고요령(별표 1)”과 “논문작성요령(별표 2)”을 따른다.

④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 1저자를 지칭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한다. <개정 2013. 10. 21.>

제9조(논문게재) ①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 중 2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1호, 5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2호, 8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3호, 11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4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당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개정 2013. 10. 21.>

제4장 논문의 심사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① 투고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여 해당분야의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에게 심사진행을 의뢰한다.

②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은 전공분야, 심사경험, 연구실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심사를 진행한다. 단, 접수된 논문이 제13조의 기준에 비추어 심사위원을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이 판단하면 그 사유와 함께 “게재 불가”를 위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7.>

③ 위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분야의 특성상 해당 논문에 대해 심사 책임자가 적은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심사방법)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 주관하에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② 1차 심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2차, 3차 등의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심사기한 안에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8., 2026. 4.13.>

④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 걸쳐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12조(심사절차) ①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접수된 논문의 심사주관을 의뢰하며, 투고논문과 “논문심사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 3. 5.>

③ 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의견서”와 투고논문을 송부한다. <개정 2013. 10. 21.>

④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위원에게 송부한다. 송부된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을 거쳐 저자에게 전달된다.

⑤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논문은 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서”를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⑥ 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며 “통계연구 논문심사의견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송부한다.

⑦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위원과 심사위원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은 1차 심사위원이 심

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⑧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⑨ 정해진 심사기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위원에게 논문심사독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1.>

⑩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장이 관련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1.>

제1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2.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결과의 실용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전개의 적합성
5. 투고규정의 준수성
6. 참고문헌의 적정성

제14조(게재판정) ① 위원은 심사위원 3명의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한 경우에는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8., 2025. 12. 30., 2026. 4.13.>

②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1. 8.>

③ 1, 2차 심사에서 제1항과 2항에 의해 게재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며, 수정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단, 3차 심사의 판정 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제한한다. <신설 2021. 11. 8.> <개정 2026. 4.13.>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영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설 2021. 11. 8.>

⑤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게재 불가”를 승인한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1. 27.>

제15조(비밀엄수 등) ①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게재 및 논문 저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2025. 6. 30.>

② 학술지 「통계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업무관련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저자의 개인정보 등

모든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발간 목적 이외에는 이용하면 안 된다. <개정 2013. 10. 21., 2025. 6. 30>

③ 논문저자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학술지 「통계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연구」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25. 6. 30.>

[제목개정 2025. 6. 30.]

제5장 보칙

제16조(저작권재산권) ① 「통계연구」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논문의 저작권재산권 일체는 저자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국가데이터처에 귀속된다. <개정 2018. 3. 5., 2025. 10. 1.>

②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할 수 있고, 저자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위의 이용 및 게재는 국가데이터처에서 학술지를 발행한 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8. 3. 5., 2025. 10. 1.>

③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통해 제3자의 이용허락조건, 제2유형(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에 동의해야 하고, 국가데이터처는

논문에 저작권 귀속주체와 공공누리 정책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18. 3. 5., 2025. 10. 1.>

제17조(논문의 재제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
의 저자가 이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새로
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개정 2021. 11. 8.>

제18조(발간) 「통계연구」는 연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 발간한다. 단,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발
간한다. <개정 2021. 11. 8.>

제1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규정 폐지) “통계청 예규 제28호”가 폐지된 날로 “「통계
연구」편집위원회 운영세칙”도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의 범위 안에서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규정 폐지) 통계개발원 예규 제12호 “「통계연구」 원고료 및 심사, 편집위원수당 지급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2021. 11. 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 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2. 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6.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0.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1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투고요령

논문투고는 국가데이터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통계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논문 투고요령을 따르며 논문형식은 논문작성요령을 참고한다. 「통계연구」에는 통계 전 분야에 걸쳐 국가통계발전과 정책적·학술적 기여가 있는 논문을 게재하되 국문논문/영문논문 모두 투고 가능하다.

1. 논문제출

「통계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저자는 「통계연구」 원고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논문 투고 신청서>와 함께 편집 위원장에게 수시로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한다. 단, 시스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우편(statjournal@korea.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논문분량은 통계연구 작성요령에 따라 가급적 25쪽 내외로 하고, 최대 30페이지는 넘지 않도록 한다.

2. 참고논문제출

논문에 인용된 참고논문으로서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나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제출해야 한다.

3. 요약문 및 주요용어

국문논문의 경우 본문 앞에 국문 <요약>을 그리고 본문 끝에 영문 <Abstract>을 추가한다. 국문 <요약> 아래에는 '주요용어'를, 영문 <Abstract> 아래에는 'Key words'를 제시하되 3~5개 정도를 반드시 기입한다. 요약문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간략하게 작성하되, 가능한 10줄 내외로 작성한다.

영문논문의 경우 본문 앞에 영문 <Abstract>을 그리고 본문 끝에 국문 <요약>을 추가한다.

4. 소속 및 주소

논문제출 당시의 저자의 주소, 소속, 직위, e-mail 주소를 각주(footnote)를 사용하여 표기해야 한다. 저자가 2명 이상이면 공동저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1저자, 제2저자 순서를 정하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반드시 표기한다.

5. 각주와 두주

본문에서는 각주(footnote)와 두주(headnote)의 사용을 가급적 피한다. 각주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투고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거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각주에 “김통계의 학위논문 축약본 또는 발췌논문”임을 분명히 밝힌다.

6. 그림과 표

그림이나 표는 직접 출판할 수 있는 형태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림 번호는 그림의 윗부분에, 표 번호는 표의 윗부분에 표기한다.

7. 참고문헌

학회지명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아래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참고문헌의 배열 순서는 먼저 국문 참고문헌을 저자의 가나다 순으로 작성하고, 다음에 영문 참고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 [별표 2. 논문작성요령]에서 참고문헌의 작성예시 참고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로 문의한다.

논문작성요령

1. 「통계연구」 투고 논문 작성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통계연구」 투고요령에 따라 [한글 및 MS워드] 문서작성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를 위한 Short Title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의 구성순서

제목, 저자, 요약, 본문,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편드를 받은 논문의 사사표기, 기타 감사의 글 작성), 부록(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영문요약(국문논문인 경우)

※ 영문논문인 경우, 국문 요약을 작성한다.

※ 논문의 사사표기는 제목의 각주가 아닌 본문 마지막에 ‘감사의 글’ 부분에 작성한다.

3. 한글 및 MS워드 편집요령

한글 및 MS워드 편집요령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에 따라 기능이 상이한 경우 아래 편집요령에 준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 (유의 사항) 작성된 문서의 사용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

- ‘도구’ 메뉴 → 환경설정 → 일반 탭의 사용자 정보 삭제

○ 용지설정

- A4(국배판), 여백(mm)은 위 32, 아래 45, 왼쪽 35, 오른쪽 35, 머리말 13, 꼬리말 0(꼬리말이 있는 경우는 아래 32 꼬리말 13), 제본 0

	본문	제목		요약문	수식1	수식2 (식번호)	참고문헌	각주
		절	소절					
왼쪽여백(pt)	0	0	0	20	0	0	0	0
오른여백(pt)	0	0	0	20	0	0	0	0
들여쓰기(pt)	15	0	15	0	0	0		0
줄간격(%)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30
내어쓰기(pt)							50	
글자크기(pt)	10	12	10	8	10	10	10	9
글자체	신명조체	맑은고딕체		맑은고딕체	신명조체	신명조체	신명조체	신명조체
정렬방식	양쪽	가운데	양쪽	양쪽	가운데	오른쪽	양쪽	양쪽

○ 글자의 종류

- 제목(장, 절, 항 제목 포함), 저자명, 요약문 내용은 맑은 고딕체
- 본문(표/그림 제목, 표 내용, 참고문헌 등) 내용은 신명조체*

* 신명조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바탕체, 휴먼명조체 사용 가능

○ 제목

-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영문의 경우, 전치사 및 관사를 제외한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함.

○ 저자명

-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저자 각주: 글자크기 9)
- 국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영문표기시 성은 뒤에 적음.

○ 요약문의 제목

- 글자크기 10, 진하게, 가운데 정렬

○ 요약문의 내용

- 글자크기 8, 줄간격 150%, 요약문 내용은 가능한 10줄 내외로 작성함.

○ 본문의 절 제목

-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 본문의 소절 제목

- 글자크기 10, 진하게, 양쪽정렬, 들여쓰기 10

○ 본문내용

- 글자크기 10, 양쪽정렬, 들여쓰기 10

○ 제목, 표, 그림 및 수식 편집

- <표>와 <그림> 제목의 글자크기는 9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 <표> 내용의 글자크기는 9pt,
- <표>, <그림>은 캡션 편집하지 않는다.
- 인용한 표/그림/수식에 대하여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구 분	전개번호	구 분	전개번호	위 치
장	1	표	<표 1.1>	표 위 가운데
절	1.1	그림	<그림 1.1>	그림 위 가운데
항	1.1.1	수식	(1.1)	수식 뒤 우측 끝

■ 표 편집

① 표의 일련번호는 장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부여한다.

예) 1장에 표가 1개, 2장에 2개 있는 경우, 표 위에 <표 1.1>, <표 2.1>, <표 2.2> 등

② 표그리기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진한선	내 부	 없음	보통선 또는 투명선
왼 쪽/오른 쪽	없음	투명선	표두 아래쪽		이중선

■ 그림 편집

예) 1장에 그림 1개, 3장에 그림 1개 있는 경우, 그림 위에 <그림 1.1>, <그림 3.1> 등

■ 수식편집은 한글 및 MS워드의 수식편집기를 사용한다.

- 수식은 가운데 정렬
- 수식의 번호는 장의 번호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부여하고, 오른쪽 정렬한다.
-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는 수식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에 인용되는 논문명은 축약하지 않고 사용하고, 저자의 수는 모두 나열한다. 논문명 다음에 권(호)를 기재하되, (호)가 필요 없는 경우(해당권의 페이지 번호가 호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인 경우)는 표기하지 않는다. 참고문헌의 배열순서는 먼저 국문 참고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작성하고, 다음에 영문 참고문헌을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예)

김경미, 이의규, 정미옥 (2008a).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통계연구>, 13(1), 95-127.

김경미, 이의규, 정미옥 (2008b).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방법, <통계연구>, 13(2), 130-135.

박홍래 (1989). <통계조사론>, 영지문화사, 서울.

Berg, L. and Lyhagen, J. (1998). Short and Long-Run Dependency in Swedish Stock Returns, *Applied Financial Economics*, 8, 435-443.

Conley, T.G., Hansen, L.P., Luttmer, E.G.J. and Scheinkman, J.A. (1997). Short-term interest rates as subordinated diffusion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0, 525-577.

http://nso.go.kr/newcms/webjin/journal/journal_info.htm.

Rao, J.N.K. (2003). *Small Area Estimation*, John Wiley & Sons, New York.

「통계연구」 논문심사의견서

1. 논문제목	
---------	--

2. 심사단계	1차 []	2차 []	3차 []			
3. 논문평가	심 사 기 준	A 우수	B 양호	C 수정	D 보완	F 미흡
	내용의 독창성·창의성					
	내용의 중요성·결과의 활용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전개의 적합성					
	투고규정의 준수성					
	참고문헌의 적정성					

※ 위의 심사기준 중 1개 영역에서 F이면 게재불가, 2개 영역에서 D이면 수정 후 재심 필요

4. 심사의견 (시스템의 입력란에 체크)	판정결과	판정내용
	[] 게재 가능	재심사 없이 게재
	[] 수정 후 게재	일부 수정사항이 요구되며 수정내용이 수용되면 게재가능 다만, 수정내용에 대한 재심사는 필요
	[] 수정 후 재심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내용이 수용된 후 다시 재심사 필요
	[] 게재 불가	사유 작성 필요

☐ 심사 총평

☐ 수정 및 권고 사항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연구」 편집위원회 귀중

제 00-00-00호

논문 게재예정 증명서

논문저자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통계연구』

(발간등록번호 11-124○○○○-○○○○○○-○○)

게재(예정)권(호) : 통권 제○권 제○호

발행예정일 : ○○○○년 ○○월 ○○일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연구』 편집위원회는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국가데이터연구원장

※ 국가데이터연구원장 직인이 없으면 무효임

210mm×297mm(백상지 80g/㎡)

『통계연구』 논문 투고 신청서

- ※ 저자(들)는 투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저자(들)는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논문의 게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명 (교신저자)		한글 : 영문 :		
소속			직위	
연락처	주소			
	전화			
	전자우편			
투고 논문 분야		경제, 사회, 인구, 조사방법, 분석기법, 기타 ()		
투고 논문 제목				
영문 제목				
본인은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학술지 『통계연구』에 투고하고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전자우편 제출방법으로 서명을 대신함>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저작권 양도 동의서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논문제목

국문 :

영문 :

저자(들)는 본 논문을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통계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1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저자(들)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국가데이터처에 양도한다.

제2조(저자의 이용 범위) 저자(들)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본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

- ① 저자(들)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사적이용을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 ② 저자(들)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은 국가데이터처에서 학술지를 발행한 후에 가능하다.

제3조(자유이용허락) 저자(들)는 제3자가 본 논문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아래의 범위 내에서 본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조건에 동의한다.

- ① (출처 표시) 논문을 활용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에는 출처(학술지명, 발행연도, 발행기관, 저자의 이름 등)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② (상업적 이용금지) 논문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4조(보증 및 책임)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들)는 다음 사항을 확인 및 보증한 것으로 보고, 만일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 ①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 ②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통계연구」에만 제출한 것이다.
- ③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④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저자(들)는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절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통계연구』 논문심사의견 답변서

논문제목	
1. 심사위원1	☐ 심사총평 ☐ 수정 및 권고 사항 ☐ [저자] 수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
2. 심사위원2	☐ 심사총평 ☐ 수정 및 권고 사항 ☐ [저자] 수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
3. 심사위원3	☐ 심사총평 ☐ 수정 및 권고 사항 ☐ [저자] 수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연구」 편집위원회 귀중